#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

전문개정 1998. 3. 9 조례 제 946호
개정 1998. 9. 23 조례 제1088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1999. 6. 29 조례 제1145호
2000. 12. 28 조례 제1225호
2003. 11. 18 조례 제1323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2004. 1. 8 조례 제1332호(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)
2005. 7. 27 조례 제1396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, 제명개정)
2006. 12. 15 조례 제1480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, 제명개정)
2007. 3. 28 조례 제1518호
2008. 6. 16 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2010. 11. 25 조례 제173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, 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1. 3. 15 조례 제1763호
일부개정 2011. 6. 8 조례 제1781호
일부개정 2011. 8. 9 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 2014. 8. 14 조례 제2005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, 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4. 11. 18 조례 제2040호(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 2015. 4. 3 조례 제2073호(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 2015. 11. 5 조례 제2130호(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전부개정 2016. 1. 1 조례 제2154호(제명개정)
전부개정 2017. 12. 29 조례 제2321호
일부개정 2018. 4. 25 조례 제2354호
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 2018. 12. 21 조례 제2428호
일부개정 2022. 4. 19 조례 제2857호
일부개정 2023. 11. 10 조례 제3015호(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광명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24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)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등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광명시 여성비전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〈개정 2018. 12. 21〉

1. 교육사업: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경제력 향상을 위한 교육
2. 삭제 〈2018. 12. 21〉
3. 삭제 〈2018. 12. 21〉

4.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

5. 각종 교양 취미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

6. 그 밖에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3조(이용자의 범위)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.〈개정 2018. 12. 21〉

1.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
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4조(사용시간) 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〈개정 2018. 12. 21〉

1. 주간: 오전 9시 ~ 오후 6시

2. 야간: 오후 6시 ~ 오후 10시

② 수영장(부대시설 포함)의 일일 사용시간은 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.

## 제2장 교육운영

제5조(교육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매 연도 교육 시작 전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8. 12. 21〉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〈개정 2018. 12. 21, 2022. 4. 19〉

1. 교육의 기본방향

2. 교육의 목표, 내용, 기간, 대상자 및 인원

3. 교육생의 모집, 선발방법 및 교육 이수 내용의 평가방법

4.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정원 및 교육기간) ① 제5조에 따른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교육생 정원은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.〈개정 2018. 12. 21〉

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〈개정 2018. 12. 21〉

1. 정규과정: 4개월 ~ 5개월

2. 단기과정: 1개월 ~ 3개월
3. 그 밖에 수시과정: 1개월 이내

제7조(교육과정 신설·조정·폐강) ① 시장은 교육수요와 시정시책 등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신설·조정·폐강할 수 있으며, 폐강하고자 할 때는 폐강사유와 시기를 센터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다.

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은 과목별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등록되는 경우에 폐강할 수 있다.〈개정 2018. 12. 21〉

제8조(교육신청)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.〈개정 2018. 12. 21〉

② 수강생의 자녀 중 만 24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에 한정하여 센터 유아놀이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수강생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8. 12. 21〉

제9조(교육생 우선 선발) 시장은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. 다만, 우선선발 대상은 과목별 모집정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.〈개정 2018. 12. 21〉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
4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
5. 북한이탈주민
6.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〔제목개정 2018. 12. 21〕

제10조(강사의 위촉 등) ① 교육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.〈개정 2022. 4. 19〉

②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.〈개정 2018. 12. 21〉

1.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
2.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
3.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
4. 강의 관련 평가결과 기준점 이하의 경우
5.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
6. 센터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·운영하지 못한 경우

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〈개정 2018. 7. 31, 2018. 12. 21〉

**제11조(수강료 등)** ① 센터의 교육 수강자는 [별표 1]의 기준에 따른 교육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의 우선선발 교육생은 수강료를 면제한다.〈개정 2018. 12. 21〉

② 수영장 이용료는 [별표 3]에서 정하는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. 수영장 이용자는 사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8. 7. 31, 2018. 12. 21〉

③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8. 12. 21〉

1. 전액 반환: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
2. 일부 반환: 교육생이 수강기간 중에 수강을 포기하고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

## 제3장 삭제〈2018. 12. 21〉

**제12조** 삭제〈2018. 12. 21〉

**제13조** 삭제〈2018. 12. 21〉

## 제4장 수영장 위탁관리

**제14조(관리·운영의 위탁)** 시장은 센터 수영장을 광명도시공사, 비영리법인

또는 광명시 산하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.〈개정 2022. 4. 19〉

〔제목개정 2022. 4. 19〕

**제15조(위탁관리 등)** 수영장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」 또는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〔전문개정 2022. 4. 19〕

**제16조** 삭제 〈2022. 4. 19〉

**제17조** 삭제 〈2022. 4. 19〉

**제18조** 삭제 〈2022. 4. 19〉

**제19조** 삭제 〈2022. 4. 19〉

**제20조** 삭제 〈2022. 4. 19〉

**제21조** 삭제 〈2022. 4. 19〉

**제22조** 삭제 〈2022. 4. 19〉

부칙 〈2017. 12. 29 조례 제2321호 전부개정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8. 4. 25 조례 제2354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〉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부칙 〈2018. 12. 21 조례 제2428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2. 4. 19 조례 제2857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3. 11. 10 조례 제3015호, 만 나이 정착을 위한 「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 1〕

## 교육 수강료

(단위: 원)

| 구 분 | 기 준 | 금 액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기술· 취미·교양교육 | 1인/월 | 10,000원 | ○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 |

〔별표 2〕 〈개정 2018. 12. 21〉

## 놀이방 사용료

| 대 상 | 기 준 | 금 액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교육생 자녀 | 만 24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 | 무 료 | ○ 수강 시간 중 이용 가능<br>○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:00~18:00 |

〔별표 3〕 〈개정 2018. 4. 25〉

## 수영장 이용료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| 기 준 | 상한 금액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월 회 원 | 성 인 | 1명, 1월 | 75,000 | 복합 프로그램 별도 |
| | 중고생 | 1명, 1월 | 65,000 | |
| | 어린이 | 1명, 1월 | 60,000 | |
| 일일이용 | 성 인 | 1명, 1일 | 4,000 | |
| | 중고생 | 1명, 1일 | 3,500 | |
| | 어린이 | 1명, 1일 | 3,000 | |

［별지 제1호 서식］

| 접 수 번 호 | 교 육 수 강 신 청 서 | | |
|---|---|---|---|
| 수강신청과목 | | 성 명 | |
| 생 년 월 일 | | 성 별 | |
| **홈페이지 ID** | **(*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최종 접수완료)** | | |
| 주 소 | 광명시 | | |
| 전 화 번 호 | (핸드폰) (자택)(02) | | |
| 모집우선순위 **(※ 해당란 표기)** |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저소득한부모가정<br>③ 국가유공자(본인, 배우자, 자녀 중 1인)<br>④ 등록장애인(본인에 한함) ⑤ 다문화가족<br>⑥ 북한이탈주민<br>⑦ 미성년의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| | |
| 제 출 서 류 | 1.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| | |
| | 2. 해당 증빙 서류 원본(해당자) | | |

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8월 일

신청자 (인 또는 서명)

**광명시장** 귀하

---

| 접 수 번 호 | 교 육 신 청 접 수 증 | | |
|---|---|---|---|
| 수강신청과목 | | 성 명 | |
| 홈페이지 ID | | 생년월일 | |

※ 유의사항

○ **일반접수 후 등록결과 정원의 70%미만으로 폐강이 결정될 경우, 우선접수를 하셨더라도 해당 강의는 폐강 조치가 됩니다. 이 경우, 선착순 추가접수기간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한 강의를 재신청하셔야 하며 수강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.**

○ 전기 교육 중도포기 및 미수료 하신 강좌가 있을 시 차기 교육신청이 제한됩니다.

위와 같이 교육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**광 명 시 장**

〔별지 제2호 서식〕〈개정 2023. 11. 10〉

| 접수번호 | 어린이 위탁 신청서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어린이 | 성명 | | 생년월일 | ( 세) | 성별 | |
| | 주소 | 경기도 광명시 | | | | |
| 수강자 | 성명 | | 생년월일 | | | |
| | 관계 | | 전화번호 | | | |
| 수강과목 | | 수탁시간 | 시 분부터 시 분까지 (요일: ) | | | |
| 수탁기간 |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 개월 ) | | | | | |
| 첨부서류 | | | | | | |

위 어린이를 귀 센터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(인 또는 서명)

**광명시장** 귀하

---

| 어린이 수탁 승인서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어린이 | 성명 | | 생년월일 | ( 세) | 성별 | |
| | 주소 | 경기도 광명시 | | | | |
| 수강자 | 성명 | | 생년월일 | | | |
| | 관계 | | 전화번호 | | | |
| 수강과목 | | | 수탁요일 | | | |
| 수탁기간 및 시간 |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 개월) ( 시 분부터 시 분까지, 요일 : ) | | | | | |

위와 같이 수탁을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**광 명 시 장**

〔별지 제3호 서식〕 삭제 〈2022. 4. 19〉